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5
----------	----

제출년월일 : 2015년 4월 29일

제 출 자 :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 가. 현행 대행업체 운영방식인 “독립채산제”(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세입 조치 없이 운영비로 충당)는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및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 규정 위반이므로 종량제 수수료 예산편입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종량제 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법」 위반을 해소하고자 함.
- 나. 우리 구의 종량제 수수료는 '97년 이후 현재까지 18년간 동결되었으나 쓰레기 처리 비용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최근 서울시에서 제시한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인상 가이드라인(25개구 공통)에 따라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배출하는 자의 부담원칙에 입각한 처리 수수료 부과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 용어 정리 및 지급 근거규정 마련
(안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
- 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별도로 기준을 정함 (안 제23조제2항)
- 다. 종량제규격 봉투 구분 및 용어 정리 (안 제24조제1항 및 제6항)
- 라. 종량제 수수료 예산편입 근거규정 마련(안 제36조)
- 마. 종량제봉투 가격을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의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안 제23조제2항 별표4)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1)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 3) 입법예고(2015.3.25. ~ 4.14.)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 4)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6)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2항 본문 중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수집·운반·재활용·처분방법”을 “수집·운반·처리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 비용을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로 한다.

제2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량제 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다.

제24조제1항 중 “공공용봉투 및 재사용봉투”를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 음식물류봉투”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음식물류 봉투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담는다.

제36조 중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해당 폐기물을 처리한 자”를 “폐기물 수수료 등은 서대문구”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종량제 폐기물의 수수료 개정 규정인 별표 4의 규격봉투가격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신·구조문대비표

규격봉투 가격(제23조제2항 관련)

일반규격봉투

(단위 : 원)

구분	생활폐기물용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2015년	2017년	2015년	2017년
5ℓ	120	130	-	-
10ℓ	220	250	360	400
20ℓ	440	490	720	800
50ℓ	1,100	1,250	1,800	2,000
75ℓ	1,650	1,880	2,700	3,000
100ℓ	2,220	2,500	3,600	4,000

특수규격봉투

(단위 : 원)

구분	생활폐기물용	
	2015년	2017년
50ℓ	4,590	5,100

재사용봉투

(단위 : 원)

구분	생활폐기물용	
	2015년	2017년
10ℓ	220	250
20ℓ	440	490

※ 봉투가격 시행 2015년 인상분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2017년 인상분은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p>제12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재활용·처분방법 ~ 6.(생략) <p>③ (생략)</p> <p>④ <신설></p>	<p>제12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 ----- ----- ----- -----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 ----- ----- ----- ----- ② ----- -----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 ----- ----- ----- ----- 1. (현행과 같음) 2. ----- ----- 수집·운반·처리 ----- ----- 3. ~ 6.(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 비용을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제21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하기</p>	<p>제21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 ----- ----- ----- 수집, 운반 또는 처리-----</p>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종량제 수수료의 예산편입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재정법」 위반을 해소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서울시 표준안에 따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임.
- 상기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사항은 없음

4. 작성자

- 청소행정과 행정6급 박외만(330-1507)

□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5.1.20.] [법률 제13038호, 2015.1.20., 일부개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④ (생략)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 ⑨ (생략)